

## 「2023년 경북 재난지역 소상공인 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사업」 모집공고

경상북도와 [재]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료(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)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. 2. 20.

[재]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### 지원대상

- 경상북도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, 산재보험 가입자(사업주만 해당)

### 접수방법

- 다음 신청방법 모두 신청기간 내 접수

#### ① 방문 및 우편접수

- (37313)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,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
소상공인지원팀 054-995-9933
- (39393)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, 1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근린생활  
상가 내 소상공인지원팀 054-476-5364

- ② 이메일 접수 lhwokok@gepa.kr (소상공인지원팀 대리 이희우)

- ② 팩스접수 054-471-9945

### 문의

-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: 소상공인지원팀 ☎ 054-995-9933
-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  
(고객의소리, 국민신문고)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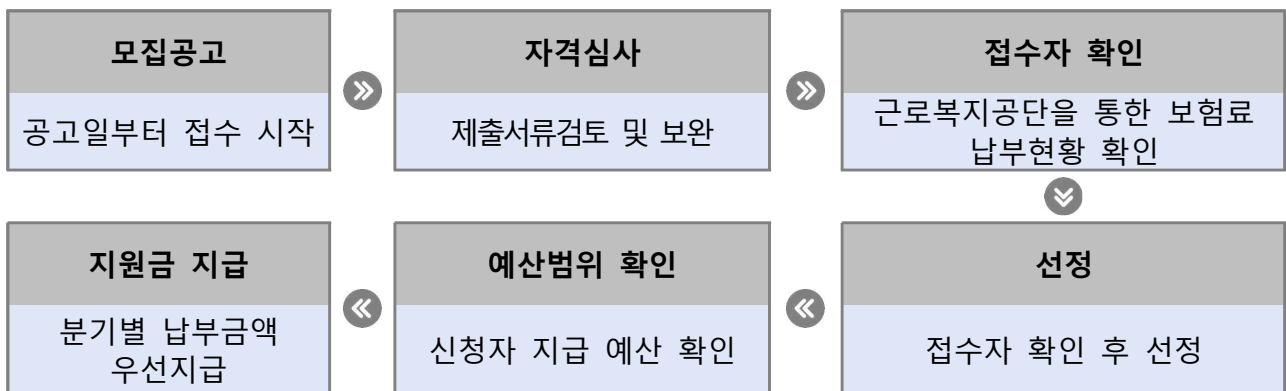
### 선정결과 통보

- 개별통보(필요시 접수 홈페이지 공고)

# 1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	2023년 경북 재난지역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
○ 지 원 대 상 :	경상북도 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및 인근지역의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, 산재보험 가입자(사업주만 해당)
○ 선 정 방 법 :	자격심사(접수순서, 납부내역 조회, 예산범위 등)
○ 사 업 내 용 :	공고문 상세내용 참조
○ 사 업 기 간 :	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시까지
○ 대상자별 지원금액 :	예산범위 내 지원 - 월보험료 등급별 지원자격 및 납부실적 확인 후 지원 * 고용보험료: 1~2등급 40%, 3~4등급 60%, 5~7등급 70% * 산재보험료: 1~12등급 90% 지원
○ 신 청 방 식 :	방문,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
○ 신 청 기 간 :	2024.02.20. ~ 예산소진시까지(마감공고 예정) * 단, 접수순 지급으로 인해 예산부족 시 납부금은 조기지급 중단될 수 있음
○ 지 급 시 기 :	접수일 기준 다음 월 내에 지급
○ 유 의 사 항	
- 소 상 공 인 증 명 :	소상공인 증빙방법은 2가지로, [5. 신청방법]을 참고하여 서류 제출

# 2. 추진절차



\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3. 주요 공지사항

- (지원대상) 경상북도 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및 인근지역의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, 산재보험 가입자(사업주만 해당)
- (신청기간) 2024.02.20. ~ 별도 마감공고 이전까지
- (지원내용) 2023년 7~12월분 자영업자 고용, 산재보험료 납부액 40~90% 지원  
\* 고용보험료: 1~2등급 40%, 3~4등급 60%, 5~7등급 70%  
\* 산재보험료: 1~12등급 90% 지원
- (조기종료) '23년 사업예산 소진으로 인해 접수기간 내 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.
- (선정통보) 신청접수 시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 예정

### 4. 신청자격

- (자격)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(영주, 문경, 예천, 봉화) 및 인근지역(안동, 상주, 의성, 울진, 영양, 청송) 소재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
  - ① **소상공인**(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)
    - (상시근로자수)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
\*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  - ② **지원제외 대상**

<b>지원제외 대상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</li><li>- 사치향락업종(골프장, 무도장)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(투기, 저해업종 등)</li><li>- 본인 및 법인명의로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</li><li>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</li><li>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</li><li>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</li><li>-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(붙임3 참조)</li></ul>
--------------------	--

## 5. 신청방법

### □ 신청·접수

- (접수기간) 2024.2.00.( ) ~ 예산소진시까지
- (접수방법) 방문,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
  - 주 소: (37313)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,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
소상공인지원팀 054-995-9933
  - (39393)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, 1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근린생활  
상가 내 소상공인지원팀 054-476-5365, 5366
  - 이메일: [lhwokok@gepa.kr](mailto:lhwokok@gepa.kr) (소상공인지원팀 대리 이희우)
  - 팩 스: 054-471-9945
  - 상기 신청방법 모두 신청기간 내 접수

### □ 신청서류(소상공인 자격은 붙임자료 참고)

연번	제출서류		서류명 및 검토사항
1	신청서		○붙임 양식 작성
2	개인정보이용·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	○붙임 양식 작성
3	사업자등록증		○국세청 홈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 세무서
4	통장사본		○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제출
5	소상공인 확인 (택 1)	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<sup>1)</sup>	상시근로자수 * 상시근로자 0명: 보험자격득실확인서 * 상시근로자 1명 이상: 다음 증빙서류 중 택1 :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, 사업장 가입자별부과내역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, 월별(반기별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※ 직전 1개년(12개월)
		소상공인확인서 <sup>2)</sup>	○중소벤처24

1) 온라인 또는 방문 발급

\* 온라인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홈택스

\* 방문: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(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)

2) 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며, '중소벤처24' 또는 '중소기업  
현황정보시스템'에서 발급 가능 - 서류 제목 '중소기업 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' 및 하단  
'중소벤처기업부장관' 명의 확인

\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: <https://sminfo.mss.go.kr>

\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접수 불가

## 6. 지원금 지급 방법

---

### ① 지급기준

- (대상자) 해당사업 참여 신청자 접수순 우선지급
- (대상금액) 소상공인별 등급기준 확인 후 고지금액 대비 지급비율
  - 월보험료 등급별 지원자격 및 납부실적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며, 고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
  - \* 고용보험료: 1~2등급 40%, 3~4등급 60%, 5~7등급 70%
  - \* 산재보험료: 1~12등급 90% 지원

### ② 지급방법

- (지급원칙) '23년 3분기(7월~9월), 4분기(10월~12월) 순으로 지급
  - (예산범위 내) 신청자 전원 지급
  - (예산초과 시) 3분기 우선지급 후, 4분기는 접수순으로 지급
  - 모든 신청자는 사회보험료(고용보험, 산재보험) 납부를 종료하거나 자발적 지급거부 의견이 있을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

# 붙임1. 소상공인 기준

## 소상공인 기준

< 소상공인 확인기준[붙임1] >

①연평균매출액 +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

### □ 소상공인 기준(연평균매출액 + 상시근로자수)을 만족하는 자

\*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서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① (연평균매출액)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』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-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

\* 단,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상 연매출액로 대체(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)

② (상시근로자수)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

-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, 「장애인기업지원자금」에 한하여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 가능

-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

구 분		내 용
산정기준	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	직전 사업연도 1월~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	② 업력 12개월 이상	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	③ 업력 12개월 미만	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
	④ 업력 1개월 미만	산정일 현재 인원
확인서류	상시근로자 無	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
	상시근로자 有	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(반기별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등

\*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, 기준 ①을 우선 적용

## 붙임2. 신청서류 설명자료

제출목적		서류명 및 검토사항	비고	발급기관
업종 확인 등		-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 자등록증명원 사본	택1 (영업신고증 불가)	[온라인] 국세청 홈택스 [오프라인] 사업장 소재 세무서
소상 공인 확인 증빙 서류	소상공인 확인서 보유	- 소상공인확인서		*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[온라인]중소벤처24 [오프라인]우편발송/중기청 방문(02-3215-2674)
	소상공인 확인서 미보유 (둘다 제출)	<매출액 증빙서류>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 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(기간: '22년1월~12월, '23년 1월~12월)		1.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[온라인]정부24, 국세청홈택스 2.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[온라인]국세청홈택스
		<상시근로자 없는 경우>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<상시근로자 있는 경우> -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(기간: 직전 사업연도 1~12월)	*2023년 개업한 경우, 공고일 전까지의 매월 말일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확인	*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: [온라인] 국민건강홈페이지 [오프라인] 국민건강보험공단, 행복복지센터  *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: [온라인]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)  *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: [온라인] 국세청 홈택스

### 붙임3. 지원제외 대상 업종

증분류	표준산업 분류	업 종
기타제품제조업	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도매및상품중개업	46102 중	담배 중개업
	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	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	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	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	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소매업 (자동차제외)	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	47811 중	약국, 한약방
	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	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창고및운송관련서 비스업	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음식점 및 주점업	56211	일반유흥주점업
	56212	무도유흥주점업
출판업	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	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정보서비스업	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금융업	64	금융업
보험 및 연금업	65	보험 및 연금업
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	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
증분류	표준산업 분류	업 종
부동산업	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<b>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</b> 은 신청가능 - 부동산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 <b>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</b>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기계 및 장비임대업	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전문 서비스업	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수의업	731	수의업
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	73904 중	감정평가업
사업지원서비스업	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사업지원서비스업	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보건업	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	91241 중	복권 판매업
	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 <sup>2</sup>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
	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	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	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